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1-5호

「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19일

상 주 시 의 회 의 장



「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,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구현하기 위해 학생들의 교복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나.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,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다. 교복 지원금액과 지원절차를 규정함(안 제5조 및 제6조)
- 라. 교복구입비 지원금액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2월 23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의회

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untae0819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 (전화: 054-537-7842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☐ 자치법규명: 상주시 교복 지원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견	비고